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항공보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12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항공보안법이 개정(법률 제18354호, 2021. 7. 27. 공포)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,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·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설정(시행령안 제15조의2 신설)

주민등록증,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, 그 밖에 증명서나 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

나. 공항운영자 등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규정(시행령안 제15조의3 신설)

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*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제시된 신분증명서 확인을 대체하여 생체정보 활용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

* [공항운영자]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(탑승권과 신분증명서 대조)

** [항공운송사업자]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(신분증명서 확인 또는 탑승권 예약 정보와 신분증명서 대조), 수하물 위탁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(탑승권과 신분증명서 대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2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제15조의4로 하고,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)

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주민등록증,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”란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(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)나 서류를 말한다. 다만,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나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약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나 서류를 포함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에 따라 발급된 주민등록증
2. 「여권법」 제4조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여권
3. 「도로교통법」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
5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같은 법

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

6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

7. 「선원법」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

8.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

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.

제15조의3(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) 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.

1. 공항운영자 :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할 것

2. 항공운송사업자

가.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 :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탑승권 예약 정보와 신분증명서를 대조할 것

나.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: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할 것

②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

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
③ 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“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
2.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

④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2(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)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주민등록증,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”란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(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)나 서류를 말한다. 다만,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나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약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나 서류를 포함한다.</u> <u>1.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에 따라 발급된 주민등록증</u> <u>2. 「여권법」 제4조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여권</u> <u>3. 「도로교통법」 제85조에 따</u>

<신 설>

른 운전면허증 및 같은 법 제9
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
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
5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3조에
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
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4항에
따른 승무원등록증
6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
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
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
7. 「선원법」 제45조에 따라
발급된 선원수첩
8.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
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
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
에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
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
이나 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아야
한다.
제15조의3(본인 일치 여부 확인
방법 및 절차 등) ① 공항운영
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
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
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

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.

1. 공항운영자 :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할 것

2. 항공운송사업자

가.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 :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탑승권 예약 정보와 신분증명서를 대조할 것

나.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: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할 것

②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항

<u>제15조의2</u> (생략)	<u>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</u> ③ <u>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“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/u> <u>1.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</u> <u>2.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</u> ④ <u>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</u> <u>제15조의4</u> (현행 제15조의2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237